

중고차 · 폐자동차를 수출할 때에는

※ 2005년 1월부터 자동차 리사이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중고차를 취급할 시의 주의

폐자동차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도도부현지사 등에의 등록 · 허가가 필요합니다. 차체 절단 등의 해체 작업을 한 자동차는 폐자동차로서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해체에 있어서는 자동차 리사이클법에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1

중고차를 수출하는 일이 있습니까?

↓ Yes

중고차를 수출할 때에 부품을 떼어내거나, 반컷 등의 해체 작업을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 Yes

「해체업자」에 해당하여, 자치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No

자치제에의 수속은 특별히 없습니다.

→ No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컨택센터에 문의

확인 2

중고차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 Yes

폐자동차를 인수하는 일이 있습니까?

↓ Yes

「인수업자」에 해당하여, 자치제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No

자치제에의 수속은 특별히 없습니다.

→ No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컨택센터에 문의

※ 일단 「폐자동차」로서 인수한 차를 재등록 · 중고차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를 수출할 시에, 컨테이너 등에 적재하기 위해 중고차에서 자동차부품을 떼어내는 행위는, 자동차 리사이클 법에 있어서 해체 업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해체에 있어서는,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원칙에 따른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허가 없이 폐자동차나 해체중의 자동차(폐차폐기물)를 취급하게 되면, 무등록 · 무허가 영업으로써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엔 이하의 벌금)됩니다. 이미 자동차 리사이클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몇몇의 사업자가, 경찰에 의한 체포 등의 엄중한 조치를 받고 있으니, 각별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자동차」로서 인수한 차를 해체할 경우에는, 프레온류, 에어백류의 회수와 함께, 폐유, 폐액, 배터리 등의 적정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 자세한 것은 뒷면의 각 연락처로.



■ 리사이클 요금의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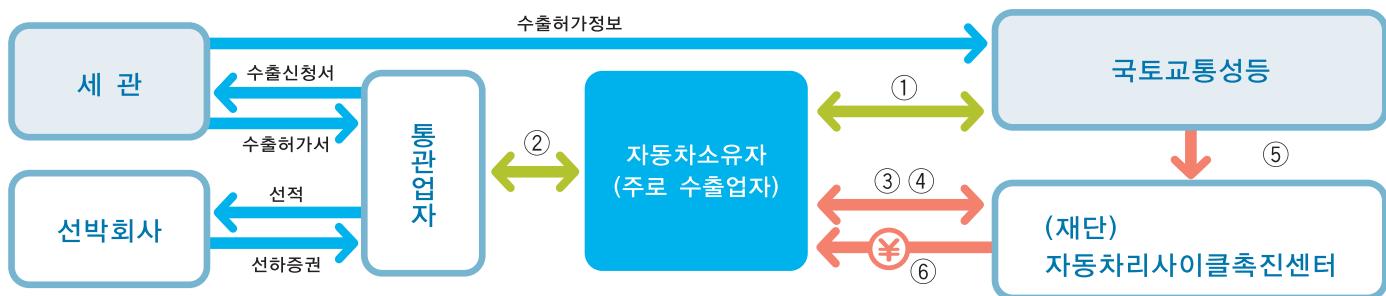
리사이클 요금이 예탁되어 있는 자동차를 중고차로서 수출할 경우, 그 소유자는 (재단)자동차 리사이클 촉진센타에 대해, 리사이클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 신청서 「재자원화 예탁금 등의 반환신청서」
- ② 수출말소 가등록 증명서 및, 수출 예정신고서
- ③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수출허가서의 복사
- ④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선하증권의 복사



■ 신청에 따른 수속절차



사전준비

- ① 국토교통성에의 수출관계절차

- ② 통관수속의 의뢰



신청에서 요금반환까지

- ③ 신청서의 송부

- ④ 신청서의 수리

- ⑤ 수출말소등록등의 정보와 반환신청정보의 조회 및 확인

- ⑥ 리사이클 요금의 반환

* 또한, 시스템의 형편상,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 등에 기재된 「수출예정일」로부터 약 2개월후에 리사이클요금이 반환됩니다.

〈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수수료〉

신청서의 작성방법으로는,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재자원화 예탁금 등의 반환신청서)를 다운 받아, 그 서류에 필요사항을 직접 손으로 기입하는 방법(일반신청)과,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직접 필요사항을 입력하여 그것을 인쇄하는 방법(컴퓨터 신청)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신청을 하는 쪽이, 저희 센터에서의 신청입력·신청내용 등 확인·가부통지 등에 걸리는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신청보다 수수료가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신청 : 950엔/대 일반신청 : 1390엔/대

수출대수가 많은 사업자를 비롯하여, 가능한 한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에의 사업자등록(등록수수료와 연회비는 불필요)을 행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업자」로서 컴퓨터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상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 http://www.meti.go.jp/policy/automobile_recycle/index.html

리사이클 요금 반환의 상세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jars.gr.jp>

리사이클등록의 반환신청에 관한 문의처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수출반환 사무센터

- 전화 : 0570-064-860
- 접수시간 : 평일9:00~17:00 (토일·공휴일을 제외함)

자동차 리사이클 시스템 컨택센터(콜센터)

- 전화 : 03-5673-7396
- 접수시간 : 평일8:30~20:00 (토일·공휴일9:00~18:00)

*문의는 일본어로 부탁드립니다.